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4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 상세기준(개정) >

분과	코드 번호	코드명	기준 내용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용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x.do)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044-203-5182)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관용 밸브 설치 기준을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정합화 (FU431, FU432, FU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범위에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 ○ PE배관 손상 방지를 위한 로케이팅와이어 설치 기준 정합화 (FU431, FU432, FU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집단공급 및 배관망 시설기준(FS331, FS334)을 준용하여, PE 배관의 탐지형 보호포 및 로케이팅와이어 등 설치 기준 명확화 ○ 공동주택·오피스텔·콘도미니엄의 배관 설치기준 명확화 (FU431, FU432, FU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건축물 내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배관 설치기준 적용 범위를 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으로 규정 ○ 그 밖의 연소기 설치기준을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정합화 (FU431, FU432, FU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정합성 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그 밖의 연소기 설치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 ○ 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단독주택 정기검사 항목 수정 (FU431, FU432, FU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25.11.28.)에 따라 공동저장시설로 제한했던 단독주택 정기검사 범위를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 반영 ○ 액화석유가스 사용 및 판매 시설기준 내 인용 법률명 현행화 (FU431, FU432, FU433, FS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으로 이분화되어, 지정 문화유산을 규정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으로 법률명 현행화 ○ 배관 지하매설 기준 중복 오류 수정(FU4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관 매설 기준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타 상세기준 (FU432, FU433)을 준용하여 굴곡허용반경 기준으로 개정 ○ 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내 용어 명확화(FU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플렉시블호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타 상세기준(FU431, FU432)을 준용하여 금속플렉시블호스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FU431 FU432 FU433 FS231 (총 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가스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FS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22.2.3.)에 따라 제5조 제4항 신설 및 제5조제5항이 개정되어 인용 조항을 현행화 ○ 조항 제목 기재 오류 수정(FS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조항 제목에 내용 없음을 표기 	
--	--	--